

의안번호	2208747
의 퇴 인	박홍배의원
회 답 일	2025.5.22.
추계번호	25B134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8조의10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2	안 제76조의17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제1항) -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76조의21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음 -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재량규정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3	안 제76조의 20 (저공해자동차 인증표지 등)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76조의24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함(제1항)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의무규정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제6항)	재량규정
5	안 제76조의25 (민간부문 무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무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무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하고 자금을 우선 보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6	안 제76조의2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6조의17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2항) 1.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실적 및 계획 3.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의무규정

		5. 그 밖에 구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안 제76조의27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 및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8조의10제5항 신설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 미대상 안 제58조의10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58조제3항¹⁾에 따라 환경부에서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수소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내역사업명</th><th>2024년</th><th>2025년</th></tr><tr><td>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1633-312)</td><td>수소충전소 설치</td><td>181,720</td><td>196,280</td></tr></table> 자료: 환경부 - 참고로 수소충전소 중장기 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현황은 아래와 같음 <수소충전소 중장기 배치계획 관련 연구용역 현황> <table><tr><th>용역명</th><th>수행기간</th><th>수행기관</th><th>예산</th></tr><tr><td>수소충전소 중장기 배치계획 수립</td><td>2020.12~ 2021.4</td><td>한국교통연구원</td><td>5,000만원</td></tr></table> 자료: 환경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1633-312)	수소충전소 설치	181,720	196,280	용역명	수행기간	수행기관	예산	수소충전소 중장기 배치계획 수립	2020.12~ 2021.4	한국교통연구원	5,000만원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1633-312)	수소충전소 설치	181,720	196,280															
용역명	수행기간	수행기관	예산															
수소충전소 중장기 배치계획 수립	2020.12~ 2021.4	한국교통연구원	5,000만원															
		• 미대상 안 제76조의17제1항은 현행법 제58조제3항의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편성된 사업 예산으로 집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76조의17제1항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 등)	－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대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음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내역사업명</th><th>2024년</th><th>2025년</th></tr><tr><td rowspan="2">무공해차 보급사업 (1633-311)</td><td>전기자동차 보급</td><td>1,734,000</td><td>1,521,770</td></tr><tr><td>수소자동차 보급</td><td>571,350</td><td>721,830</td></tr></table> 자료: 환경부 －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²⁾에 따라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수소가스 생산시설 지원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내역사업명</th><th>2024년</th><th>2025년</th></tr><tr><td rowspan="2">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6233-403)</td><td>수자원기반 청정수소 생산</td><td>3,264</td><td>2,499</td></tr><tr><td>바이오가스기반 청정수소 생산</td><td>13,400</td><td>15,452</td></tr></table> 자료: 환경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1633-311)	전기자동차 보급	1,734,000	1,521,770	수소자동차 보급	571,350	721,830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6233-403)	수자원기반 청정수소 생산	3,264	2,499	바이오가스기반 청정수소 생산	13,400	15,452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1633-311)	전기자동차 보급	1,734,000	1,521,770																					
	수소자동차 보급	571,350	721,830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6233-403)	수자원기반 청정수소 생산	3,264	2,499																					
	바이오가스기반 청정수소 생산	13,400	15,452																					
	안 제76조의17제2항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 등)	• 미대상 안 제76조의17제2항은 현행법 제58조제19항³⁾의 조문을 이동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76조의 20제3항 신설 (저공해자동차 인증표지 등)	• 미대상 안 제76조의20제3항은 현행법 제58조제13항⁴⁾의 조문을 이동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76조의24 신설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 미대상 안 제76조의24제1항 및 제6항은 현행법 제58조의5제1항 및 제58조의9⁵⁾의 조문을 이동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환경부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참고자료 참고)																						
5	안 제76조의25 신설 (민간부문 무공해자동차 구 매·임차지원)	• 미대상 안 제76조의25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현행법 제58조의5제3항 및 제2항⁶⁾의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구매·임차 지원의 대상을 무공해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이 민간부문에 무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임차를 권고하고 자금의 우선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6	안 제76조의26제1항 신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 미대상 안 제76조의26제1항은 현행법 제58조제18항7)의 조문을 이동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는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내역사업명</th><th>2024년</th><th>2025년</th></tr><tr><td rowspan="2">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1633-312)</td><td>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td><td>436,500</td><td>623,750</td></tr><tr><td>수소충전소 설치</td><td>181,720</td><td>196,280</td></tr></table> 자료: 환경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1633-312)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436,500	623,750	수소충전소 설치	181,720	196,280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1633-312)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436,500	623,750										
	수소충전소 설치	181,720	196,280										
	안 제76조의26제2항 신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참조											
7	안 제76조의27제1항 신설 (무공해자동차 등 연료공급 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미대상 안 제76조의27제1항은 현행법 제58조제16항8)의 조문을 이동한 것으로, 현재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무공해차 통합시스템 운영 예산>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내역사업명</th><th>2024년</th><th>2025년</th></tr><tr><td>무공해차 보급사업 (1633-311)</td><td>무공해차 통합시스템 운영</td><td>12,223</td><td>12,223</td></tr></table> 자료: 환경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1633-311)	무공해차 통합시스템 운영	12,223	12,223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2025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1633-311)	무공해차 통합시스템 운영	12,223	12,223										

1)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 2) 법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⑨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4)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법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6) 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7)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8)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상세 사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안 제76조의26제2항)

- 안 제76조의26제2항과 같이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 절차, 방법 및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2025년에 ‘전기차 충전시설 중장기 보급 로드맵 수립(2025~35)’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4,920만원임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

(환경부 제출자료)

□ 추진 목적

- 공공부문에서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하는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임차토록 의무를 부과

□ 제도 개요

- **(대상)**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⁹⁾ 중 차량 6대 이상 보유기관(771개, 23년 기준)
 - '23년 기준 국가기관 51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458개
- **(의무 비율)** 신규 구매·임차 차량의 무공해차 비율 100%('23년~)
- **(과태료)** 미달성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국가기관 제외)
 - 과태료 규정은 '17.12월 수도권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으며, '19년부터 부과

□ 제도 이행현황

- 저공해차와 무공해차 달성 대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 추세

(단위: 대)

연도	합계(a)	저공해차				일반	의무비율달성(b/a)
		소계(b)	1종	2종	3종		
'20	7,736	6,060	1,806	3,688	566	1,676	74.5%
'21	7,458	6,927	5,504	1,301	122	531	92.9%
'22	8,072	7,282	6,385	752	145	790	90.2%

- 의무비율 준수 기관 수 전년 대비 증가 추세
 - ('20) 422개소 → ('21) 510개소 → ('22) 612개소

9)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정부출연기관법, 과기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법, 공기업민영화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기관